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 590호 2024. 1. 4 (목)

입법예고

제2024-19호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939
제2024-23호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942
제2024-24호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950

고 시

제2024-1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6961
제2024-3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6963

공 고

제2024-34호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맞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36971
-----------	--------------------------------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5급 이상의 직급을 복수 직렬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1)

- 부서 직급·직렬조정

구 분	직 급	현 행	조 정(후)
의회사무국	4급	행정	행정·기술
진영읍	5급	행정·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8.까지 김해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김해시청 총무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총무과
- 전 화 : 055-330-2693 (FAX : 055-722-1971)
- E-mail : hilllily@korea.kr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5급 이상의 직급을 복수 직렬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1)
 - 부서 직급·직렬조정

구 분	직 급	현 행	조 정(후)
의회사무국	4급	행정	행정·기술
진영읍	5급	행정·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2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 1. 4. ~ 2024. 1. 8. (4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 .

김해시규칙 제 호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기능 쇠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삭제 및 사무명 수정
-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소 이전으로 위치 변경
- 사무 축소에 따른 인력을 신규행정사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김해연구원 설립 예정에 따라 도시상임기획단 사무 삭제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상위법 전면 개정(국가유산기본법, 20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 사업소의 명칭.위치(조례안 별표 2)

명칭	위치	
	현재	변경후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김해대로 2402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7-13	김해시 김해대로 2402

- 종류별.기관별 정원조정(조례안 별표 6)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비고
현 행(명)	2,060	920	40	311	318	64	407	
조정후(명)	2,060	914	40	311	324	64	407	
증 감(명)	-	-6	-	-	+6	-	-	

- 업무분장 혼선 예방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규칙안 별표 6, 7, 8, 9)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규칙안 별표 11)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현 행(명)	2,060	920	40	311	318	64	32	105	270
조정후(명)	2,060	914	40	311	324	64	32	105	270
증 감(명)	-	-6	-	-	+6	-	-	-	-

-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구 分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명)	2,016	18	90	444	645	485	334
조정후(명)	2,016	18	90	443	645	487	333
증 감(명)	-	-	-	-1	-	+2	-1

- (일반직) 직렬별 정원조정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복지	사서	공업	농업	녹지	수의	보건	식품 위생	의료 기술	간호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방송	사무 운영	기타 직렬
현행	2,016	757	92	39	233	38	100	73	47	5	64	4	37	84	73	173	87	38	19	8	45
조정	2,016	758	92	39	233	39	101	73	48	5	64	4	37	85	73	174	87	38	19	8	39
증감	-	+1	-	-	-	+1	+1	-	+1	-	-	-	-	+1	-	+1	-	-	-	-	-6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24까지 김해 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김해시청 총무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총무과
- 전 화 : 055-330-2693 (FAX : 055-722-1971)
- E-mail : hilllily@korea.kr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기능 쇠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삭제 및 사무명 수정
-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소 이전으로 위치 변경
- 사무 축소에 따른 인력을 신규행정사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김해연구원 설립 예정에 따라 도시상임기획단 사무 삭제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상위법 전면 개정(국가유산기본법, 20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 사업소의 명칭·위치(안 별표 2)

명칭	위치	
	현재	변경후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김해대로 2402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7-13	김해시 김해대로 2402

- 종류별·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6)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비고
현 행(명)	2,060	920	40	311	318	64	407	
조정후(명)	2,060	914	40	311	324	64	407	
증 감(명)	-	-6	-	-	+6	-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 1. 4. ~ 2024. 1. 24.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2. 19.(예정)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4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6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2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2

[별표 6]

김해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30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2,060	914	40	311	324	64	407
정무직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016	908	40	282	315	64	407
2 급	1	1					
3~4급	1	1					
4 급	16	6	1	3	3	1	2
5 급	90	38	3	15	14	3	17
6급 이하 소계	1,908	862	36	264	298	60	388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2	2					
연구직 계	13	3		1	9		
연구사	13	3		1	9		
지도직 계	28			28			
지도관							
지도사	28			2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도시계획(개발) 정책방향 연구 · 분석 및 자문</u> 5. ~ 12. (생 략)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12. (현행과 같음)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사업소 가. ~ 나. (생 략) 다. 가야사 정책 · 복원, <u>문화재</u>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생 략) 2. ~ 5. (생 략)	제20조(소관사무)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야사 정책 · 복원, <u>국가유산</u>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사무 축소에 따른 인력을 신규행정사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업무분장 혼선 예방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안 별표 6, 7, 8, 9)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1)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현 행(명)	2,060	920	40	311	318	64	32	105	270
조정후(명)	2,060	914	40	311	324	64	32	105	270
증 감(명)	-	-6	-	-	+6	-	-	-	-

-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구 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명)	2,016	18	90	444	645	485	334
조정후(명)	2,016	18	90	443	645	487	333
증 감(명)	-	-	-	-1	-	+2	-1

- (일반직) 직렬별 정원조정

구분	계	행정	세무	전산	복지	사서	공업	농업	녹지	수의	보건	식품 위생	의료 기술	간호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방송 통신	사무 운영	기타 직렬
현행	2,016	757	92	39	233	38	100	73	47	5	64	4	37	84	73	173	87	38	19	8	45
조정	2,016	758	92	39	233	39	101	73	48	5	64	4	37	85	73	174	87	38	19	8	39
증감	-	+1	-	-	-	+1	+1	-	+1	-	-	-	-	+1	-	+1	-	-	-	-	-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 1. 4. ~ 2024. 1. 24.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2. 19.(예정)

김해시규칙 제 호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변경 (안 제5조)
- 나.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 신설 (안 제18조)
- 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 개정 (안 제26조)
-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안 제44조)
- 마. 그 밖에 조문 변경사항 및 개선·보완사항 반영 (안 제19조, 안 제29조의2, 제36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건축과(건축행정팀)
(전화:055-330-3653, FAX:055-722-0467)
-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담당자 조은혜 주무관 (055-330-36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건축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규칙안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 .
제출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변경(안 제5조)
-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 신설(안 제18조)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6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44조)
- 그 밖에 조문 변경사항 및 개선·보완사항 반영(안 제19조, 안 제29조의2, 제3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1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조의7, 제6조, 제6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7조의2, 제8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조의5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규제개혁 영향분석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구 및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의 경우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는 바, 해당 단체·기관에서 여성 추천이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 충족이 불가하여 미반영함
- 입법예고 : 2024. 1. 4. ~ 1. 23.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2. .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마목 외의 부분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축 및 개·재축의 경우에는 연면적 10분의 1 초과 규모

제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공장·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제19조제2호 단서 부분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김해시 건축조례 제649호, 2007년 8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환경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 제15호”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를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명세서”를 “공사내역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전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삽 제</p> <p>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가. ~ 라. (생 략)</p> <p>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 이용건축물</p> <p>바.~사.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⑤ (생 략)</p> <p>제18조(적용의 완화) ①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19조(기준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1. (생 략)</p>	<p>제5조(기능)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 이용건축물. <u>다만, 중축 및 개·재축의 경우에는 연면적 10분의 1 초과</u></p> <p>바.~사. (현행과 같음)</p> <p>아. 공장·창고의 신축인 경우에 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 이가 40미터 이상인 건축물</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적용의 완화)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u></p> <p>제19조(기준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 ----- ----- ----- ----- ----- 1. (현행과 같음)</p>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5. (생략)

<신설>
<신설>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 5. (생략)

제29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 -----
-----.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김해시 건축조례 제649호, 2007년 8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
-----.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 제15호

3.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 ⑤ (생략)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_____
----- 공사내역서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작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1. -- 10미터 -----

2. -- 10미터 -----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건축 조례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input type="radio"/>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변경
2.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input type="radio"/>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 <input type="radio"/>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3. 규제목적	<input type="radio"/> 대형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향상 등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 관리 구현
4. 규제내용	<input type="radio"/> 공장·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5.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input type="radio"/>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이나 공장·창고 용도는 제외되어 있으며, 최근 대형 창고 시설의 건축 증가로 안전 및 피난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증가
6. 규제의 존속기한	<input type="radio"/> 규제 완화 시까지
7.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input type="radio"/> 관련부서: 의견없음 <input type="radio"/> 민간·단체: 의견없음
※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변경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 작성자: 건축과장 김관호 건축행정팀장 담당자 조은혜 				
4. 근거법령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 의 내용	<p>「김해시 건축 조례」 제5조(기능) ○ 종전 규제의 내용</p> <p>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나. <삭제 2021.7.16.></p> <p>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p> <p>라.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p> <p>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p> <p>바. 영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p> <p>사.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연면적 합계 10분의1 초과 또는 2개층 이상 층수 변경</p> <p>○ 신설 규제의 내용</p> <p>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아. 공장·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건축물</p>				
7. 규제의 존속 기한과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시까지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최근 건물 길이가 100m 이상인 대형 창고시설의 건축으로 화재·지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주변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전 및 피난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증가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이나 공장·창고 용도는 제외되어 있어 전문적인 검토 절차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계획, 구조안전, 시공,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 가능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대체수단 존재여부 : 해당없음
- 기존규제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 신설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등 비용 발생은 있으나,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형 공장·창고 건축으로 시민에게 안전·쾌적성 제공 가능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비예산 사업이며,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별도 민원사무 구비서류 및 절차 규정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해당없음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변경
2. 규제내용	○ 공장·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견	○ 관련부서: 의견없음 ○ 민간·단체: 의견없음
4. 자체심사 의견 (규제범위, 방법 등)	○ 건물 길이가 100m 이상인 대형 창고시설의 건축 증가로 화재·지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주변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전 및 피난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m^2 이상인 건축물은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이나 공장·창고 용도는 제외되어 있어 전문적인 검토 절차 필요함.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m^2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m 이상인 공장·창고의 신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하고자 함.
5. 첨부자료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산2-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시행면적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m ²)	사업시행면적(m ²)	비고
근린공원	213,055	183,791	경상남도 고시 제1995-66호 (1995. 04. 06.)
체육공원	305,410	153,587	김해시 고시 제2020-304호 (2020. 10. 23.)
체육시설	168,980	2,109	김해시 고시 제2020-149호 (2020. 05. 2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김해시장(산림과장)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1. 09. 08. ~ 2023. 12. 31.
- 변경 : 2011. 09. 08. ~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변경없음)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사유

- 잔여사업 미준공(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 및 산림과(☎055-350-6403)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산38-25	임	82,555	47,483	김해시					
2		87	임	1,412	972	김해시					
3		산48-3구	구	542	542	김해시					
4		산31-1	임	4,370	4,370	김해시					
5		산47	묘	19,052	19,052	김해시					
6		산46	임	298	298	김해시					
7		60-6	대	59	59	김해시					
8		산31-4	임	19,854	19,854	김해시					
9		84-1	잡	99	99	김해시					
10		84	잡	122	122	김해시					
11		85	잡	3,842	3,842	김해시					
12		83	잡	407	407	김해시					
13		산27-1	구	1,816	1,816	김해시					
14		86-1	잡	539	539	김해시					
15		산44-1	임	44,862	44,862	김해시					
16		60-7	대	11,742	11,742	김해시					
17		산25	임	18,347	18,347	김해시					
18		70	잡	228	228	김해시					
19		71	잡	301	301	김해시					
20		산25-1	구	4,524	3,666	김해시					
21		산2-4	임	126,243	119,992	김해시					
22		산4-1	유	37,588	11,156	김해시					
23		산7	임	16,071	9,963	김해시					
24		29-1	임	53	53	김해시					
25		29	임	360	360	김해시					
26		28	대	1,079	1,079	김해시					
27		산7-1	구	7,046	4,179	김해시					
28		30-1	대	3,169	3,169	김해시					
29		산11	임	21,780	10,935	김해시					
계				428,360	339,487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75-3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시행면적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m^2)	사업시행 면적(m^2)	비고 (시설결정일)
근린공원	A=32,873 m^2	A=32,873 m^2	'15. 9. 25
중로1-9호선	L=537m, B=20~26m	L=351m, B=20m, A=7,262 m^2	'17. 02. 10
대로1-1-1호선	L=22,580m, B=35~49m	L=309m, B=9.25m, A=2,964 m^2	'17. 02. 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정 :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 변경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6. 04. 29. ~ 2020. 12. 31.
- 변 경 : 2016. 04. 29.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변경없음)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사유

- 보상협의 완료된 토지소유자 변경 및 준공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 및 공원녹지과(☎055-350-6375)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공원)

사업명: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진영리	88 - 1	구	2,316	103	김해시				기정
2	여래리	700 - 70	도	331	17	김해시				기정
3	여래리	700 - 73	도	76	14	김해시				기정
4	여래리	700 - 78	철	3,240	2,087	김해시				기정
5	진영리	274 - 19	철	5,122	5,043	김해시				기정
6	진영리	275 - 34	철	4,721	4,227	김해시				기정
7	진영리	274 - 56	전	248	248	김해시				기정
8	진영리	275 - 89	학	1,462	110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9	진영리	275 - 94	전	198	85	김해시				기정
10	진영리	275 - 130	전	357	357	김해시				기정
11	진영리	275 - 261	철	62	53	김해시				기정
12	진영리	275 - 264	철	2,405	2,364	김해시				기정
13	진영리	275 - 265	철	952	901	김해시				기정
14	진영리	275 - 277	학	204	204	김해시				기정
15	진영리	275 - 287	철	13,241	12,946	김해시				기정
16	진영리	275 - 296	철	3,938	3,906	김해시				기정
17	진영리	685	구	1,730	208	국(농림수산부)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도로:중로1-9)(1)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1	진영리	299	-38	전	217	217	김해시		기정
2	진영리	285	-10	전	3	3	김해시		기정
3	진영리	285	-8	전	560	560	김해시		기정
4	진영리	284	-2	전	604	604	김해시		기정
5	진영리	284	-4	잡	507	507	김해시		기정
6	진영리	282	-13	전	109	109	김해시		기정
7	진영리	282	-17	전	5	5	김해시		기정
8	진영리	282	-2	대	182	182	김해시		기정
9	진영리	281	-1	대	142	142	김해시		기정
10	진영리	282	-5	대	69	69	김해시		기정
11	진영리	275	-290	대	111	111	김해시		기정
12	진영리	275	-288	대	69	69	김해시		기정
13	진영리	275	-289	대	81	81	김해시		기정
14	진영리	275	-280	도	1,621	1,621	국토교통부		기정
15	진영리	275	-135	대	50	50	김해시		기정
16	진영리	275	-286	철	1,131	1,131	김해시		기정
17	진영리	275	-295	철	695	695	김해시		기정
18	진영리	275	-292	대	12	12	김해시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도로:중로1-9)(2)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진영리	299	-40	전	14	14	김해시			기정
20	진영리	299	-41	전	65	65	김해시			기정
21	진영리	282	-14	대	1	1	김해시			기정
22	진영리	282	-16	대	59	59	김해시			기정
23	진영리	282	-15	대	36	36	김해시			기정
24	진영리	275	-278	대	171	171	김해시			기정
25	진영리	275	-297	도	5	5	김해시			기정
26	진영리	275	-279	대	225	225	김해시			기정
27	진영리	275	-267	대	37	37	김해시			기정
28	진영리	275	-214	대	30	30	김해시			기정
29	진영리	275	-283	대	35	35	김해시			기정
30	진영리	275	-284	대	64	64	김해시			기정
31	진영리	275	-285	장	154	154	김해시			기정
32	진영리	275	-293	대	9	9	김해시			기정
33	진영리	275	-294	도	11	11	김해시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도로:중로1-9)(3)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33	진영리	301	-8	도	3	3	이○수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		기정
34	진영리	285	-7	전	10	7	김해시			변경
35	진영리	285	-13	전	8	8	김해시			기정
36	진영리	285	-12	전	44	44	김해시			기정
37	진영리	284	-7	전	34	34	김해시			기정
38	진영리	299	-43	전	5	5	김해시			기정
39	진영리	299	-35	전	28	1	김해시			기정
40	진영리	285	-11	전	61	61	김해시			기정
41	진영리	284	-6	전	15	15	김해시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도로:대로1-1-1)(1)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진영리	299	-18	도	3,492	105	국토교통부			기정
2	진영리	299	-25	전	104	18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		기정
3	진영리	299	-28	전	318	18	김해시			기정
4	진영리	299	-3	도	165	19	국토교통부			기정
5	진영리	299	-4	전	11	10	김해시			기정
6	진영리	300	-8	전	35	1	김해시			기정
7	진영리	299	-13	도	98	37	국토교통부			기정
8	진영리	299	-29	답	577	122	김해시			기정
9	진영리	299	-31	전	187	39	김해시			기정
10	진영리	298	-6	도	20	19	국토교통부			기정
11	진영리	298	-13	도	8,464	1,771	국토교통부			기정
12	진영리	299	-30	답	201	37	김해시			기정
13	진영리	299	-15	답	12	11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		기정
14	진영리	299	-32	전	160	98	김해시			기정
15	진영리	299	-39	전	44	44	김해시			기정
16	진영리	301	-9	답	67	67	이○수	김해시 진영읍 ~		기정
							김해시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도로:대로1-1-1)(2)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7	진영리	301	-3	답	162	162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 분당구 ~		기정
18	진영리	301	-7	답	51	51	이○수	김해시 진영읍 ~		기정
19	진영리	304	-7	답	121	121	김해시			변경
20	진영리	304	-3	답	29	25	김해시			기정
21	진영리	305	-13	전	191	133	김해시			기정
22	진영리	305	-8	전	22	22	김해시			기정
23	진영리	305	-14	전	89	34	김해시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도로)

사업명: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정렬순서 : 소재지순

연번	소재지 지번 (김해시)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성명	주 소	
1	진영리 275-284 (당초 : 275-23)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33.0	m ²	신○주	부산시 동래구 충렬사로~	기정
		창고	블록/스래트지붕	42.0	m ²			
		우물		1.0	식	김해시		
						이○재		
2	진영리 275-284 (당초 : 275-23)	동산이전비	농지재	1	식	김해시		기정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맞담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맞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관동동 45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맞담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맞담공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어린이공원 (맞담공원)	1,998.9	1,998.9	최초결정일 1995. 10. 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생활지원과장)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15. ~ 2023. 10. 30.

6. 준 공 일 : 2023. 10. 31.

7. 문의처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 및 생활지원과(☎055-350-1383)